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2. 5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2. 7

다. 상 정 일 자 : 제63회 사하구의회(임기회)
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98.2.16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영식 가정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(95. 12. 30)과 지방재정법 제64조(금고의 설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(세입세출외현금등의 금고보관)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 규정중 기관단체,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의 기금의 조성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조제1항제3호)
-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 규정중 적립기금을 구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함.(안 제8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) 제1항이 95.12.30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으며,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발적인 기탁금이라도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되고, 행정목적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접수토록 함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무분별한 기부금품 모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3호를 삭제함이 가하다고 판단되며

- 적립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함으로 기금예탁 예금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각종기금 및 유가증권은 해당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함으로 시금고 예치 일원화 하라는 부산광역시 조례와 일치시킨 사항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